

제4장 성명권 침해 사례

사례 41

공인이 아닌 신청인의 실명을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1 광주조정2 손해청구
 신청인 : 엄 ○ ○
 피신청인 : 최 ○ ○ (파인뉴스)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11. 1. 12.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피소된 전 화순군수에 관해 보도하면서 고발자인 신청인의 성명을 그대로 게재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공인이 아닌 자신의 이름이 노출되어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3천5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파인뉴스 : 『또 법정에 서게 되어 군민에게 죄송』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11일자)

내 용 : 전형준 전 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또 고발을 당해서 법정에 서게 됐다.

그러나 전형준 전 군수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해, 법정에서 쟁점다툼이 치열 할 것으로 보인다.

특정세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엄○○ 씨가 전형준 前 군수를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한 선거관련 재판이 광주지방법원 형사4부(정창호 부장판사) 202호 법정에서 열렸다.

엄○○ 씨는 지난 7월21일 전형준 前 군수가 총 6건의 불법선거운동을 했으며,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엄씨의 고발에 따라 광주지검 공안부는 수사를 통해서 총 4건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하여 10일 첫 심리가 열린 것이다.

6건의 고발내용은 “이양 청풍면 양○○ 씨, 김○○ 씨 상대로 100억 살포설. 화순읍소재 본향교회앞 불법선거운동. H씨를 상대로 서울 송파구청앞 일식집에서 전완준 군수 지지요구. 지난 5월 23일 임○○ 군수후보 운동원인 서○○ 씨에게 전완준 후보 지지부탁. 2010년 2월 9일 돈선거추방위의 100억 살포설 녹취록 공개 관련. 선거기간인 5월 23일 전완준 후보 유세차량에서 손을 흔들어 지지호소”를 했다는 고발 내용이다.

검찰은 4건의 공소사실만 인정했고 검찰의 공소내용은, “2010년 5월 20일 화순읍 부영3차아파트 정문부근에서 지나가는 지역민에게 전완준 군수를 부탁한다면서 악수를 청하고 선거용 명함을 나누어 준 것과 5월 23일 화순5일 시장입구에서 전완준 후보 유세차량에 올라가 전완준을 외쳤다”고 주장했다.

또한 5월 25일 한국○○○교회 화순지역회관 입구에서 교인들에게 기호8번 전완준 부탁하면서 명함을 주었으며, 화순읍 유천리 보석랜드 주차장 근처 노상에서 전형준 후보의 명함과 홍보물을 건네준 혐의다.

검찰은 전형준씨가 선거법위반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화순군수 후보자인 동생 전완준을 위해 4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전형준 前 군수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내용 모두를 부인하고 공판과정에서 진실을 가리켰다고 말했다.

전형준 前 군수는 재판부의 인정 심문에서 검찰이 주장한 현장에는 있었지만 결코 선거운동등 선거법 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엄○○씨, 이○○ 씨, 김○○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12월 1일 오후2시에 속행된다. 이번 공판에 참여한 한 군민은 ‘이렇게 집요한 세력들이 있는 한 화순군민의 화합은 상당히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전형준 前 군수는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불행한 군수는 전형준으로 끝나야 된다”며 “전형준은 앞으로 화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와 헌신을 하겠다”며 “종교인들이 이번에 또 고발을 해서 법정에 서게 되어 화순군민에게 송구할 뿐” 이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일금 35,0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1년 2월 28일까지 금 일백만원을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011. 1. 21.